

시	설화경	안전관리	규정

관리번호	W-11.1	제정일	2013년 02월 15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16년 10월 31일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장	시행일	2016년 12월 01일
주무부서	관리과	검토주기	3년
관련근거	의료기관인증기준11.1	검토예정일	2019년 10월 30일

1. 목적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객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Ⅱ. 정의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Ⅲ. 정책

- 1.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2.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3. 시설 및 환경안전 관련 업무 구분 및 책임자를 선정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4. 직원은 시설 및 환경안전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알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한다.

Ⅳ.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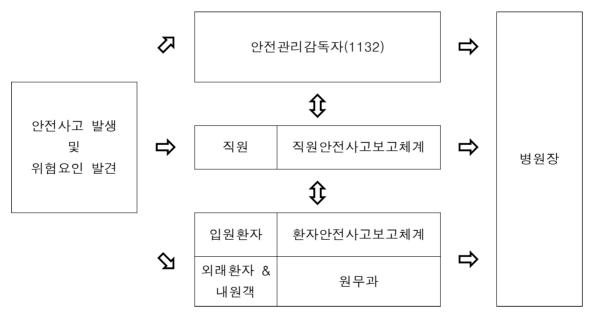
- 1. 의료기관 차원의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1)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과 위원들로 구성하며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 (2) 위원의 구성으로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염담당자, 시설담당자 등으로 구성 될 수 있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체는 위원의 반수를 원칙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2) 위원회 역할 :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안전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 (2) 소방계획에 관한 사항
 - (3)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4) 안전점검 및 유해요인에 관한 사항
 - (5) 중요 소방공사에 관한 사항
 - (6)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7)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3) 개최 주기 : 분기별 실시한다.
- 4) 결과보고 및 이행
 - (1)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서명을 받고, 위원장 및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며 윌스공지사항을 통해 공유한다.
 - (2) 병원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의료기관 차원의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감독자는 매년 12월 병원 차원의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병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2)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및 보수, 개선활동계획과 관련추정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
 - (1) 안전 분야 :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및 직원을 시설 및 환경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안전, 시설공사 안전 및 감염관련, 위험시설 등 관리
 - (2) 보안 분야: 내원객 출입관리, 폭력 및 폭행, 도난 및 분실, 아동 유괴, 위험인물 출현, 기타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보안체계 점검과 개선 등
 - (3) 위험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위험물질의 취급과 보관, 안전한 사용 수칙 준수 여부 등의 점검과 관리 등
 - (4) 화재안전 :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직원 및 의료기관의 자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 설비 및 환경적 위험요소 개선계획 등
 - (5) 재난 관리 : 재난 상황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훈련대비책
 - (6) 기타 시설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및 기타 설비시스템의 안전점검, 유지 및 보수 등
- 3. 시설 및 환경안전 관련 업무 구분 및 책임자 선정
 - 1)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 (1) 냉방설비, 공기정화시설, 물 공급 및 수질, 보안, 화재, 위험물질 분야, 의료기기 등 전반 적인 시설 및 환경 안전의 관리 책임은 안전관리감독자인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 (2) 전기, 가스, 소방,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 등의 안전관리는 외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 (3) 각 부서장은 부서 주변 및 복도, 계단, 공용시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관리감독자에게 고지하여 개선토록 한다.
 - 2) 업무별 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감독자의 자격: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료 하고, 업무분야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한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감독자의 업무
 - ① 연간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보고, 실행
 - ② 위탁업체의 적격한 자격 유지상태 확인 및 업무 수행의 적절성 평가 (정기적인 결과보고서와 현장 점검, 문제 발생 시 조치)
 - ③ 보안 위험구역과 보안 시스템(CCTV 등)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개선
 - ④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활동 관련 기록 관리 및 보고
 - ⑤ 시설물 유지 관리업체 선정, 행정기관 인허가 및 보고와 신고업무
 - ⑥ 시설 및 환경안전에 관한 직원 교육



- (3) 직원 및 시설 사용부서
 - ① 직원 및 사용부서는 사용 중인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관리감독자에게 고지하여 개선되도록 한다.
 - ② 시설물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가 진행 될 경우 집기 이동, 동선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 4.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직원 교육
 - 1) 안전관리감독자는 다음 연도 직원교육계획을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 정기교육은 안전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연 1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 3) 특별교육은 증축, 개축, 주요시설 또는 설비의 교체 등 병원 차원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관리책임자가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 록을 보관한다.
- 5. 시설 및 환경안전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 1) 안전사고 관리체계
 - (1) 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시설, 설비, 위험물질, 보안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환자, 내원 객, 직원 안전사고
 - (2) 보고절차 :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인 발견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 (3) 직원안전사고보고체계의 세부사항은 [W-1.2 직원안전규정] 에 따른다.
- (4)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의 세부사항은 [W-2.3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에 따른다.
- 2) 처리 절차
 - (1) 최초발견자는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2) 신고 후에는 작업 중지 및 주변 인원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 (3) 사고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한다.
 - (4) 신고 받은 해당 부서장 및 안전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지역을 표시하고 접근금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 (5) 전기, 가스, 시설물, 재난, 안전보건의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 6. 시설 및 환경안전 사고 발생 시 경영진 보고
 - 1) 안전사고 시 관련 부서장 및 안전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 2) 해당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시 윌스공지사항을 통해 직원과 공유한다.
- 7.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 관리
 - 1) 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법시행령[별표1의2]

구분	실시대상	실시시기
정기점검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	5년에 1회 이상

본원은 급성기병원으로 현재 준공일이 2012년이므로 2022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 설비시스템

전기설비 감시체계,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체계,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감시체계, 실내공기질 감시체계는 [W-11.2 설비시스템 감시체계]에 따른다.

3) 위험물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절차는 [W-11.3 위험물질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4) 보안체계

보안사고의 종류,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는 [W-11.4 환자안전보안체계]에 따른다.

입안자	규정관리위원장	
승인책임자	병원장	
서명일		